

# 정 관

(정관변경)

변경 년 월 일 2017년 06월 13일 변경

사회복지법인 굿-핸즈

# 사회복지법인 굿 핸즈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회복지법인 굿-핸즈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-5 번지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의 종류) ①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노인의료복지시설(의료기기 지원 등)에 대한 지원사업
2.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

## 제 2 장 자산 및 회계

### 제 1 절 자 산

제 5 조 (자산구분)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,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부동산
3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“표 1” 과 같다.

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 6 조 (자산의 관리)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법인이 매수·기부·채납·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제 2 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, 취득재산의 종류·수량 및 가액을 매년 1 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 제 1 절 회 계

제 8 조 (회계의 구분 등)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목적사업에 속하는 지원회계,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제 9 조 (회계의 처리)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업복지사업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0 조 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1 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 개월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5 일전까지 “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부령)”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후 1 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산년도 종료 후, 1 개월 이내에 “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부령)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 3 장 임 원

제 15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이사 1인
2. 이사 7인(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2인 포함)
3. 감사 2인

제 16 조 (임원의 선임) ①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②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충청북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18 조 (임원의 임기 등)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사회복지사업법 제 19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②법인의 임원이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 20 조 (임원의 해임) ①이 법인은 그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

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 21 조(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
다만,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그밖에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22 조 (대표권의 제한)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제 23 조 (임원의 대우)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24 조 (겸직금지) ①이사는 이 법인의 사무국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, 또는 사무국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 4 장 이 사 회

제 25 조 (이사회에의 구성)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그밖의 법령이나 이 정과에 의하여 이사회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27 조 (이사회회의 소집 등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 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 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이사회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29 조 (의결제척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 30 조 (이사회 의사록) ①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.

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수익사업

제 31 조(수익사업의 종류)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##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

제 33 조 (사무국)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4 조 (직원) ①법인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직원의 임용·복무·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##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 35 조 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 조 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## 제 8 장 공 고 방 법

제 38 조 (공고의 방법)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실는다.

②제 1 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## 제 9 장 보 칙

제 39 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40 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1 조 (규정의 제·개정)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제 1 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- ③(설립당시의 임원 등)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 과 같다.

(표 1)

기본재산목록

구 분	소 재 지	규 모	평 가 가 액	출 연 자	비 고
현 금			1,100,000,000 원	박 은 경	

(표 2)

임원명단

구분	임기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
대표이사	취임일로 부터 3년	박은경	570424-2066919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5-8
이사	"	양명주	540402-2051617	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번지 명수대 현대 APT 105-1204
이사	"	고경중	460409-2030711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6 상현마을 성원상떼빌 APT 231-101
이사	"	홍미령	480912-2231734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66 상현마을 성원상떼빌 APT 232-101
이사	"	조대경	550823-2018414	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93번지 국제산장 APT 108-1102
이사	"	이정선	620218-2002516	서울시 송파구 잠실 7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 APT 6-601
감사	취임일로 부터 2년	김영구	670919-1057519	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4 삼일 APT 101-402
감사	"	홍증옥	590308-2001619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번지 현대 ESA APT 1302호

(표 3)

법인이 사용할 인장

1) 직인

2) 대표이사의 인

3) 계 인

이상과 같이 “사회복지법인 굿-헨즈” 를 설립하기 위하여  
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

2005.10.10

발기인대표 : 박 은 경 (인)

발 기 인 : 양 명 주 (인)

발 기 인 : 고 경 중 (인)

발 기 인 : 홍 미 령 (인)

발 기 인 : 조 대 경 (인)

발 기 인 : 이 정 선 (인)

발 기 인 : 김 영 구 (인)

발 기 인 : 홍 증 옥 (인)